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47065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2. 20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김진득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3. 1. 20. 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4. 10. 31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김태수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 자	2019.09.23.	(1)179,000,000 (2)187,950,000		2019.09.25.	(1)2019.09.09 (2)2021.10.01		
주택도 시보증 공사 (임차인 김태수)	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19.09.23 ~ 2023.09.22	(1)179,000,000 (2)187,950,000		2019.09.25	(1)2019.09.09 (2)2021.10.01	2024.10.31.	
<비고>										
김태수: 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. 10. 6.임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(다만, 임차권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에 한함)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47065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15-49, 215-50, 215-51
주은채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125번나길 48-12

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

5층 공동주택

1층 17.67㎡

2층 170.61㎡

3층 170.61㎡

4층 157.26㎡

5층 142.41㎡

옥탑1층 17.16㎡(연면적제외)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2층 202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39.45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15-49
112.6㎡

2. 동 소 215-50
111.1㎡

3. 동 소 215-51
124.9㎡

대지권의종류 : 1, 2, 3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, 2, 3. 348.6분의 24.03

감정평가액

219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 2026.03.18

219,000,000

21,900,000

2회 2026.04.29

153,300,000

15,330,000

3회 2026.06.10

107,310,000

10,731,000

4회 2026.07.15

75,117,000

7,511,700